

#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1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8. .  
제출자 관광진흥과장

## 1. 제안이유

- 김포 함상공원의 관리·운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입장료 감면 대상자 정비 및 확대(안 제6조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)
- 나. 법제처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2. 7. 15. ~ 8. 4. (20일)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 - 2) 부서협의결과
   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   - 나) 부패영향평가 : 의견있음 (붙임)
    - 다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   - 가) 중앙부처 :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
    - 나) 경기도 : 관광과

##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 다음 각 호와” 를 “뜻은 다음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부서관 이하의” 를 “현역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20인” 을 “20명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별표1과” 를 “별표와” 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입장료의 면제)” 를 “(입장료의 감면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면제한다” 를 “면제할 수 있다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다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” 을 “다른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” 를 “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” 를 “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 공무수행, 관광지 홍보, 축제, 행사, 촬영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” 로, 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2.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6조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라 면제를” 을 “감면을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함상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

개방할 수 있다.

제7조를 삭제하고,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7조로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9조)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제15조” 를 “제14조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3. 그 밖에 시설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(중전의 제11조)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1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3조)제1호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1조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14조(중전의 제15조)제1항 중 “자는” 을 “사람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는 제1항의 규정” 을 “사람은 제1항” 으로 한다.

“별표 1” 을 “별표” 로 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]

김포합상공원 입장료(제5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개 인	단 체
어린이	1,000	700
청소년· 군인	2,000	1,500
어른	3,000	2,000

※ 김포시민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(다만,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)

별표 2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관광진흥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관광진흥과장 이금미
	팀장 직위·성명	관광정책팀장 강지호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서기 원지영(☎5104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“군인”이라 함은 <u>군적이 있는 부사관 이하의 군인(전·의경 포함)</u>을 말한다.</p> <p>4. · 5. (생략)</p> <p>6. “단체”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<u>20인 이상</u>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5조(입장료) ① <u>합상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입장료는 별표1과 같다.</u>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제6조(입장료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<u>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u>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7. 「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8. 「<u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 다음과</u>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현역</u> ----- -----.</p> 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입장료) ① ----- ----- ----- <u>별표와</u>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입장료의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15조 ----- -----</p> <p>8. 「<u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</u></p>

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9. (생략)

10.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

<신설>

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제7조(입장료의 감면)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입장료를 별표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8조 (생략)

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-----  
-----  
-----

9. (현행과 같음)

10. 그 밖에 공무수행, 관광지 홍보, 축제, 행사, 촬영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 ----- 사람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2.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감면을 -----  
-----  
-----.

④ 합상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.

<삭제>

제7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제9조(관람 및 행위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미만의 사람 및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<신 설>

2. 3. (생략)

3.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지시에 불응한 사람

4. 기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10조 (생략)

제11조(위탁관리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2조(관리자의 의무) ① (생략)

② ~④ (생략)

제13조(위탁관리의 취소) 시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관리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
2. ~ 5. (생략)

제14조 (생략)

제8조(관람 및 행위의 제한) -----

-----  
-----.

<삭 제>

3. 그 밖에 시설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

1. 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2. 제14조 -----  
-----

<삭 제>

제9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제10조(위탁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.

제11조(관리자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~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위탁관리의 취소) 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제11조에 따른 -----  
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 (현행 제14조와 같음)

제15조(안전수칙 준수) ①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설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②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제16조 (생 략)

제17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함상공원의 관리운영상황을 지도·점검할 수 있으며,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

[별표 1]

김포 함상공원 입장료(제5조제1항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개 인	단 체
어린이	1,000	700
청소년·군인	2,000	1,500
어른	3,000	2,000

[별표 2]

김포시민 감면요금(제7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어린이	청소년·군인	어른
500	1,000	1,500

제14조(안전수칙 준수) ① -----

----- 사람은 -----

-----.

② ----- 사람은 제1항

-----.

제15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

제16조(지도·감독) -----

-----.

제17조 (현행 제18조와 같음)

[별표]

김포 함상공원 입장료(제5조제1항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개 인	단 체
어린이	1,000	700
청소년·군인	2,000	1,500
어른	3,000	2,000

※ 김포시민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 
(다만,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)

<삭 제>



**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**

[시행 2020. 12. 31.] [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76호, 2020. 12. 31.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김포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12.31.>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김포함상공원”이라 함은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-1번지 일원의 공원시설 및 함정 내·외부 시설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20.12.31.>
2. “어른”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0.12.31.>
3. “군인”이라 함은 군적이 있는 부사관 이하의 군인(전·의경 포함)을 말한다.
4.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
5. “어린이”라 함은 만6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0.12.31.>
6. “단체”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위치)** 김포함상공원(이하 “함상공원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-1번지 일원으로 한다. <개정 2020.12.31.>

**제4조(관람시간)** 관람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5조(입장료)** ① 함상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입장료는 별표1과 같다. <개정 2020.12.31.>

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에 따라 징수한다. <개정 2020.12.31.>

③ 제2항에 따른 입장권은 당일만 이용이 가능하다. <개정 2020.12.31.>

**제6조(입장료의 면제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. <개정 2020.12.31.>

1. 만65세 이상인 노인 및 만6세 미만인 영유아
2. 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<개정 2020.12.31.>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<개정 2020.12.31.>

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<개정 2020.12.31.>
  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<개정 2020.12.31.>
  6. 「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<신설 2020.12.31.> <중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.12.31.>
  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개정 2020.12.31.>
  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<신설 2020.12.31.>
  9. 「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<신설 2020.12.31.>
  10.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<중전 제6호에서 이동 2020.12.31.>
-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12.31.>

**제7조(입장료의 감면)**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입장료를 별표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.>

**제8조(입장료의 반환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.>

1. 함상공원 입장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
2.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함상공원의 관람이 불가능 할 때

**제9조(관람 및 행위의 제한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.>

1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미만의 사람 및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<개정 2020.12.31.>
2. 전시물의 복제를 위한 촬영,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<개정 2020.12.31.>
3.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지시에 불응한 사람 <개정 2020.12.31.>
4. 기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<개정 2020.12.31.>

**제10조(변상책임)**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함상공원 내 전시물 등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위탁관리)** ①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관리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
2.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기간, 수탁자의 책임한계, 위탁조건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관리자의 의무)** ① 관리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③ 관리자는 관람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위탁관리의 취소)** 시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관리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
2. 관리자가 위탁조건 등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

3. 관리자가 함상공원을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

4. 관리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5.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
**제14조(예산확보 등)** ①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.

②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함상공원의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5조(안전수칙 준수)** ①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설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②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해군 제대군인 우선채용)** 시장은 함상공원의 관리요원 채용에 있어 함상공원이 해군 함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,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군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**제17조(지도·감독)** 시장은 함상공원의 관리운영상황을 지도·점검할 수 있으며,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입장료 징수유예) 이 조례에 의한 입장료는 함상공원 개장 후 별도 공고 시까지 징수를 유예한다.

부칙 <조례 제1776호, 2020.12.3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김포 함상공원 입장료(제5조제1항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개 인	단 체
어린이	1,000	700
청소년·군인	2,000	1,500
어른	3,000	2,000

[별표 2]

김포시민 감면요금(제7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어린이	청소년·군인	어른
500	1,000	1,500

**참고 2****부패영향평가 의견**

[별지 제4호 서식]

**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(제9조 관련)**

자치법규명	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평가담당	감사담당관	직급 및 성명	행정7급 노정주
입안주무부서	관광진흥과	통보(조치)일	2022.07.25.
관련조문	검토결과	조치사항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6조(입장료의 감면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량규정의 구체화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별지 제3호 서식 세부평가서를 참고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함</li> </ul>	

## 세부평가서 (제9조 관련)

자치법규명 :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가대상 조문

개 정 안	개 선 의 건
<p><b>제6조(입장료의 감면 등)</b>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~9.</p> <p>10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</p> <p>1~2. (생 략)</p> <p>3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를 감경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	<p><b>(개선권고)</b> 시장의 재량으로 정하는 것은 재량의 객관성이 저하되며, 추가규정 등을 통하여 구체화 또는 삭제토록 <b>개선권고</b>함.</p>

평가기준

- 재량규정의 구체성 · 객관성

문제점

-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으로 부패유발 우려

검토결과

- 개선권고안을 참고하여 조례 개정 바람.